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 7. 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2004. 7.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박 도 식

가. 제안이유

- 성인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구립합창단 내에 별도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여 구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합창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내에 별도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안 제2조)
- 마포구구립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함.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추가함.(안 제3조)
- 구립합창단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만50세 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함.(안 제7조 제1항)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종전에 위촉된 합창단 단원의 활동 연령은 만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령초과로 재능 있는 단원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단장은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 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다.(안 제9조제1항)

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의 자모 또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관계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함.(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구립합창단 내에 별도의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고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제2항에서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안 제7조에서 정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기간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구립합창단의 경우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은 현행규정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능 있는 합창단원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배제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연락 등을 위해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총무는 단원의 자모 또는 운영관계자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성인은 물론 소년소녀들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3항에 구립합창단의 경우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은 현행규정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능 있는 합창단원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배제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연장회수나 활동연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어 해촉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합창단을 보다 더 탄력적이고 순발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 연장회수나 활동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로 합창단원의 자모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마포소년소녀합창단은 1995년 12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2004년 7월 1일 러시아 그라찌아발레단과의 앵콜 협연까지 총 26회의 연주활동을 해온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마포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설립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답변요지(이은규 행정관리국장) : 조례로 규정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함.

○ 질의요지(김광섭 위원) : 조례에 재능있는 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을 연장 할 수 횟수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 답변요지(박도식 문화체육과장) : 시행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음.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구립어린이 합창단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필요한가?

○ 답변요지(박도식 문화체육과장) : 약 3천5백6십만원임.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내부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할 수 있는가?

- 답변요지(박도식 문화체육과장) : 현재는 없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구립합창단원 선발시 기존 합창단원은 승계 하는가?
- 답변요지(박도식 문화체육과장) : 다시 선발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0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성인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구립합창단 내에 별도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여 구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합창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내에 별도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안 제2조)
- 나. 마포구구립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함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추가함.(안 제3조)
- 다. 구립합창단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만50세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함.(안 제7조제1항)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규정 신설함.
- 라. 종전에 위촉된 합창단 단원의 활동연령은 만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연령초과로 재능 있는 단원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3항)
- 마. 단장은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안 제9조1항)

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의 자모 또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관계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함. (안 제9조2항)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조례(안) : 불입

5. 예산조치 : 필요함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4.04.10 ~ 04.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4. 06.07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으로 하고, 합창단 내에 별도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성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을 위촉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합창단 단원의 활동연령은 만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단장은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② 합창단의 총무는 합창단 단원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의 자모 또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관계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명칭)----- ----- ----- 하고, 합창단 내에 별도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의 ----- ----- -----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 -----

